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 개정에 따라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요양비 및 보조기기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1. 3. 5. 시행)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81조제3항, 제4항)
- 나.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75조제1항, 별표 6)
- 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 및 사용기간·범위 확대(안 제23조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 라.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안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3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정신병원”으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라목·마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1세”를 각각 “2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신·출산과 관련된”을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을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세”를 각각 “2세”로,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6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140만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제104조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을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로 한다.

제8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양비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이하 “보조기기 판매업자”라 한다)는 보조기기 보험급여 청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가목1) 중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에서”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정신병원에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표의 기관 종류란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에서”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정신병원에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1)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2) 표의 기관 종류란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

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하고, 같은 호 과목 표의 기관 종류란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하며, 같은 호 너목 중 “라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 본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외의 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외의 요양기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인부담상한액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를 “본인부담상한액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별표 6 제1호 중 “신고한 경우”를 “신고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인 유형	지급기준	
	징수금	포상금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한 준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가.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 준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그 준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20/100]
	5천만원 초과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나.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소 이용자: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사람이나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서 보조기기를 구입한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준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1만원
	2만5천원 초과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준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대한 적용례) 별표 6의 신설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② (생략)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 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 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 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③ ----- ----- ----- ----- ----- ----- -----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 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 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 병원으로 한정한다) 일반입원 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을 이 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1. ----- ----- -----요양병원(「장애인복 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 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 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 한다)·정신병원 ----- ----- ----- ----- ----- -----			

금액

2. ~ 5. (생략)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단체의 장

6. · 7. (생략)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

2. ~ 5. (현행과 같음)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

-----.

1. ~ 4. (현행과 같음)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라목·마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6. · 7. (현행과 같음)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같은 호 마

목에 따른 종합병원, 같은 법 제 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진단명, 시술명, 중증도(重症度), 나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3. (생략)

④ (생략)

제23조(부가급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1세 미만 영유아”라 한다)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

목에 따른 정신병원, 같은 호 바
목에 따른 종합병원-----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부가급여)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2세 -----

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④·⑤ (생략)

⑥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③ -----

-----.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

2.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

<삭 제>

<삭 제>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일(유산 및 사산
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
인: 1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

⑦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
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
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
산한 경우: 100만원

⑧ (생 략)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속
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
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
관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1. -----

----- 2년

2. 2세 -----
-- 2세 -----
--- 2년-----

⑦ -----

-----.

-----.

1. -----
---- 100만원

2. -----
----- 140만원

⑧ (현행과 같음)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

-----.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양비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이하 “보조기기 판매업자”라 한다)는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④ (생 략)	<u>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연 락 처	(044) 202 - 2731